

# 강릉~제진철도 등 신규 SOC 제외

제2경춘국도만 내년 국비 반영  
교통망·건설경기 위축 불가피

내년도 국비에 반영된 도내 신규 SOC사업은 제2경춘국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이 붙었던 도내 교통망 확충 제동, 지역 건설경기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관련기사3·9면  
도는 여전히 열악한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강릉~제진 철도, 제천~삼척 고속도로, 춘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을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정부에 요청했지만 SOC예산 감축 기조로 인해 모두 제외됐다. 도

는 남북교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조기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를 요구해 왔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으로 올해 22조원보다 4조원을 줄인 18조원 가량을 편성하면서 신규 사업 반영에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제2경춘국도는 정부안에서 빠졌지만 국회 예산심의 막판 사전타당성조사평가비 명목으로 2억원이 반영됐다.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편익)가 높게 평가될 경우 우선순위 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실시했던 기본계획용역(BC 0.78)을 보완해 사전타당성조사 수치를 최대한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성현기자

# 국도건설계획 반영 발판 마련

## 제2경춘국도 예산 2억원 확보 의미

조기착공 위한 비용편익 상향 타당성 통과 중요  
김진태 의원 “5차 계획 반드시 최우선 반영”

【춘천】속보=제2경춘국도 개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평가 예산 2억원이 확보(본보 5일자 1면 보도)되며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예산은 당초 요구한 기본설계비 10억원 대신 편성된 항목이지만 제5차 국도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진태(춘천)국회의원, 도와 춘천시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예산 반영에 비관적인 시각이 많았음에도 정부를 끊임없이 방문하며 설득해 성과를 이끌어 냈다.

전문가들은 “제2경춘국도가 제5차 국도건설계획에서 우선순위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접 자치단체인 경기 가평군과의 노선 협의를 통한 투입비용 절감, 이동 수요 확대요건을 만들기 위한 대형 관광시설의 안정적 추진도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의 관건이다.

김재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의 운영비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제2경춘국도에 소극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정책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도 레고랜드와 삼악산 로프웨이의 안정적인 착공은 기

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0.78이었던 제2경춘국도 비용편익을 타당성 통과 요건인 ‘1’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두 시설은 각각 연간 130만~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2경춘국도와 연결되는 국도 31호선 확장 필요성도 커졌다.

김진태 국회의원은 “제5차 국도건설계획에 반드시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시켜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무현기자 trustme@kwnews.co.kr

# 건설업계, 몸집 늘고 일감 줄었다

동계올림픽·도로개통 호재  
건설수요 확대 업체수 증가  
공사완료로 수주 큰폭 감소  
부채 규모 300% 이상 늘어

홍천 A건설업체는 최근 공사 수주량이 줄면서 올해 매출이 40%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년보다 경쟁업체가 늘면서 작은 공사도 수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강릉 B건설업체도 올해 수주한 관급공사가 3건으로 전년 7건대비 절반 이상이 줄어들면서 직원 급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경쟁업체들이 늘면서 영업활동폭이 줄어들었다.

강원도내 건설업체가 평창동계올림픽,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각종 호재로 꾸준히 늘어난 반면 관급공사 수주와 민간 공사 일감이 줄어들면서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내 건설사업체 수는 6143개로 2010년 4308개 보다 42.6%(1835개) 늘었다. 이에 따라 도내 우량 건설업체 (상용근로자 50명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의 총 자산도 같은 기간 2736억여원에서 6709억여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도내 건설종사자 수도 1만여명 가까이 늘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시설공사와 도내 교통망 신설 등의 건설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설사업체 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몸집을 키운 도내 건설업계는 대형공사들이 마무리되고 신규 공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적은 일감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내 공공기관 건설수주액이 올해 지난 10월말까지 7898억여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기간 1조4503억여원

보다 45.4%(6604억여원) 감소했다. 또 재개발과 신규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 수요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민간분야 공사 수주액도 줄어들어 10월말까지 2조7413억여원을 기록, 전년동기 2조9180억여원보다 6%(1766억여원) 줄어 들었다.

더구나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부채 때문에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우량 건설업체들의 매출액은 2010년 4817억여원에서 2015년 7818억여원으로 62.2%(3001억여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928억여원에서 2805억여원으로 302.2%(1877억여원)나 늘어났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원지역 개발호재로 경쟁 건설업체가 늘어났지만 이후 건설수요가 큰폭으로 줄어들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제는 부채 때문에 문을 닫는 건설업체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 제2경춘국도 조기착공 무산... 명맥은 유지

내년 정부예산 2억 편성 전망  
당초 예타조사 생략계획 불발  
사업중단은 막아 '절반의 성공'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을 위한 2억원이 편성될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에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조기 착공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사업 중단은 막아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번에 확보한 2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성격의 용역을 발주하는데 쓰인다. 당초 강원도와 춘천시, 김진태 국회의원실이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편성,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려 했던 계획은 어려워졌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성격의 용역을 통해 중단 위기까지 갔던 사업 추진의 불씨를 살렸다. 용역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 분석)값을 끌어올리면 내년 하반기부터 수립에 들어가는 정부의 제5차 국도건설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제2경춘국도 건설이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뒤 진행해야 하는 실시설계를 먼저 실시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는 어려워졌지만 2021년에는 착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김의원실 관계자는 “사전예타를 통해 BC값을 보완하면 제2경춘국도가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정부 예산에 기본 조사 용역비 3억원이 세워져 사업 추진을 위한 물꼬를 뒀

나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중단 위기에 놓였었다. 이렇자 도, 시, 김 의원은 정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에서 막판 끼어넣기'를 위해 공동 대응했다. 최동용 시장은 “예타없이 설계에 들어간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정식 코스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지만 2억원 반영은 정부도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선금금반환에 대한 연대책임

**사건 개요**

원고와 ○○건설은 공동으로 발주기관인 피고 시(市)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일반적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해 피고에 제출했다. 한편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각자 선금금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지정했고, 원고가 1996년 12월 피고로부터 ○○건설의 몫을 포함한 선금금 전액을 수령할 때에도 건설공제조합 발행의 선금금보증납부서는 각자 따로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했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건설이 부도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했으며, ○○건설은 이후 원고가 기성금을 피고로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동의했고, 1998년 10월 피고에게 공사포기서를 제출했으며, 원고는 같은 해 11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단독 수급인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9년 3월 이 사건 공사를 준공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한 준공대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건설의 미정산 선금금을 준공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미정산 선금금 상당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사안 쟁점**

정부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상 의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러한 연대책임이 선금금 반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 검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

급계약의 내용에 선금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금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해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선금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성원의 선금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설의 선금금 반환채무는 ○○건설이 제출한 보증서에 의해 담보되므로 ○○건설에 대한 미정산 선금금을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

위 판례는 정부공사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계약조건 등에 비추어 선금금 반환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인바, 건설업자들이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구성원의 선금금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리가 민간 공사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건설팀 변호사